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단53184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고B

변론 종결2024. 11. 28.

판결 선고2024. 12. 12.

주 문

-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21. 6. 1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126,088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126,0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6. 1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위 2의 가.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21. 12. 10. 접수 제11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62035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0. 'C는 원고에게 32,099,020원 및 그 중 31,941,501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7.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6. 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6.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E, F가 있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13. 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3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21. 12. 10. 접수 제11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협의 후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제한 없는 상태로 C에게 이전해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4. 1. 1. 공시지가 기준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의 가액 중 C의 상속지분(2/9)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6,126,088원¹⁾ 이고, 2024. 7. 25. 기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액은 45,785,2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같거나 더 높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가액배상은 6,126,088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6,126,08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126,0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다른 채권자들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관련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원상회복이 마쳐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하영

별지

1) = {27,567,400원(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18,144,000원($24,000\text{원} \times 756\text{m}^2$) +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9,423,400원($25,400\text{원} \times 371\text{m}^2$))} $\times 2/9$